

■ 신규조문 대비표 (페이북 머니 이용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b>제 1 장 총칙</b></p> <p><b>제 1 조(목적)</b></p> <p>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페이북 머니"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b>제 1 장 총칙</b></p> <p><b>제 1 조(목적)</b></p> <p>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페이북 머니"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b>제 2 조(용어의 정의)</b></p> <p>2. "paybooc(ISP) 서비스"란 "이용자"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PC 결제화면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p> <p>3. "페이북 머니"란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당사 또는 제휴사의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되거나</p>	<p><b>제 2 조(용어의 정의)</b></p> <p>2. "페이북 서비스"라 함은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한 서비스를 말합니다.</p> <p>3. "페이북 머니"란 "회원"이 "페이북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당사 또는 제휴사의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되거나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충전"함을 통해</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 ("paybooc(ISP)" → "페이북")</p> <p>-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내용 반영</p>

<p>"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충전"함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p> <p>4.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p> <p>5.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p> <p>6. "적립"이란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를 통한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 "회사"가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회사"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p>	<p>"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p> <p>4.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p> <p>5. "접근매체"라 함은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 2 조 제 1 항 제 15 호에 명시한 것을 말합니다.</p> <p>6. "적립"이란 "회원"이 "페이북 서비스"를 통한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 "회사"가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회사"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의 "페이북 머니" 보유 잔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p> <p>7. "충전"이란 "회원"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페이북 머니"로 저장·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p> <p>8. "결제"란 "회원"이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시 그 대금을 "페이북 머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p>	
--	---	--

<p>"이용자"의 "페이북 머니" 보유 잔액을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p> <p>7. "충전"이란 "이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페이북 머니"로 저장·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p> <p>8. "결제"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시 그 대금을 "페이북 머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p> <p>9. "환급"이란 "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때 "페이북 머니"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 간에 약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p> <p>10. "송금"이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보유한 "페이북 머니"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페이북 머니"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p> <p>11. "가맹점"이란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금을 "페이북 머니"로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p> <p>12. "머니 쿠폰"이란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 이용 혹은 제휴사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p>	<p>9. "환급"이란 "회원"의 청구가 있을 때 "페이북 머니" 잔액을 "회원"과 "회사" 간에 약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p> <p>10. "송금"이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원"이 보유한 "페이북 머니"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페이북 머니"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p> <p>11. "가맹점"이란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금을 "페이북 머니"로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p> <p>12. "머니 쿠폰"이란 "회원"이 "페이북 서비스" 이용 혹은 제휴사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제공받으며,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기록되어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p> <p>13. '제휴사'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페이북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페이북 머니·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를 의미합니다.</p>	
---	---	--

<p>제공받으며,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기록되어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p> <p>13. '제휴사'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paybooc(ISP)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페이스북 머니·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를 의미합니다.</p>		
<p><b>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b></p> <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paybooc(ISP)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페이스북 머니"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p> <p>② "회사"는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 및 적용일자, 변경 내용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전까지 "paybooc(ISP)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전화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p>	<p><b>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b></p> <p>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페이스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여 "페이스북 머니"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p> <p>②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전까지 "페이스북 앱" 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 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등)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며, "회사"는 ""회원"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 ("paybooc(ISP)" → "페이스북")</p> <p>- 비씨카드 표준전자금융거래 약관 제25조 및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내용 반영</p>

<p>③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통지합니다.</p> <p>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기간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	<p>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p> <p>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 또는 “페이북 앱” 등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p> <p>④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기간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	
<p><b>제 4 조(거래지시의 철회)</b></p> <p>① “이용자”가 “페이북 머니”로 대가를 지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 등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이후에는 거래가 확정되어 “회사”에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가맹점”의 시스템 및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으로 거래지시 철회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거래 이후 별도의 추가 거래</p>	<p><b>제 4 조(거래지시의 철회)</b></p> <p>① “회원”이 “페이북 머니”로 대가를 지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 등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이후에는 거래가 확정되어 “회사”에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가맹점”의 시스템 및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으로 거래지시 철회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거래 이후 별도의 추가 거래</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한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p> <p>② 거래 확정으로 "회사"에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가맹점" 등 거래 상대방과의 약관, 법령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청약 철회, 거래 취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p>	<p>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한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p> <p>② 거래 확정으로 "회사"에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가맹점" 등 거래 상대방과의 약관, 법령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청약 철회, 거래 취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p>	
<p><b>제 2 장 이용 계약의 성립 등</b></p> <p><b>제 5 조(이용 계약의 성립)</b></p> <p>② "회사"는 "페이북 머니"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방법, "이용자"의 기준 및 자격, 이용한도, 사용처 등 "페이북 머니"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paybooc(ISP)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p> <p>③ "이용자"가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b>제 2 장 이용 계약의 성립 등</b></p> <p><b>제 5 조(이용 계약의 성립)</b></p> <p>② "회사"는 "페이북 머니"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용방법, "회원"의 기준 및 자격, 이용한도, 사용처 등 "페이북 머니"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페이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p> <p>③ "회원"이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 ("paybooc(ISP)" → "페이북")</p>
<p><b>제 6 조(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b></p>	<p><b>제 6 조(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b></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페이북 머니"의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4.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 또는 PC가 해킹되거나, "이용자"에 의해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변경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페이북 머니"의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4. "회원"의 모바일 기기 또는 PC가 해킹되거나, "회원"에 의해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변경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신설)</p>	<p><b>제 7 조 (정보의 제공)</b></p> <p>①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할 때 "페이북"의 홈페이지나 "페이북 앱"에 게재하고, 서면, 이메일, 휴대폰 문자·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p> <p>② "회사"는 "페이북 머니"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페이북"의 홈페이지나 "페이북 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중요 정보는 서면, 이메일, 휴대폰 문자·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p>	<p>-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내용 반영</p>
<p><b>제 7 조 (이용의 일시 중단)</b></p> <p>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페이북 머니"의 이용 제공을 일시적으로</p>	<p><b>제 8 조(이용의 일시 중단)</b></p> <p>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페이북 머니"의 이용 제공을 일시적으로</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p>

<p>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 및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30 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 1 항의 방법으로 24 시간 이내 안내해야 합니다.</p> <p>③ “회사”는 본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일시 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며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p> <p>④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p>	<p>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회원”에게 제 7 조 제 1 항에 정한 방법으로 3 영업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 7 조 제 1 항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p> <p>③ “회사”는 본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일시 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며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개 사실을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p> <p>④ (삭제)</p>	<p>내용 반영</p>
<p><b>제 8 조 (이용의 정지)</b></p> <p>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페이북 머니” 서비스 이용을</p>	<p><b>제9조 (이용의 정지)</b></p> <p>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페이북 머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p>	<p>-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 제2항, 제3항 반영</p> <p>- 용어 변경</p>



<p>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후 24 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메시지(SMS, LMS)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 정지 사실 및 사유,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p> <p>1.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전자금융거래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p> <p>2. 가입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p> <p>3.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페이북 머니"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p> <p>4.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p> <p>5. "회사"가 "이용자"의 "페이북 머니"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탈취·위조·변조·도난·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p> <p>②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이용자"가 "페이북</p>	<p>수 있으며, 정지 후 24시간 이내에 제7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 정지 사실 및 사유,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p> <p>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전자금융거래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p> <p>2. 신청내용의 필수 기재사항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p> <p>3. "회원"이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페이북 머니"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p> <p>4. "회원"이 "접근매체"를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p> <p>5. "회사"가 "회원"의 "페이북 머니"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탈취·위조·변조·도난·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p> <p>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원"이 "페이북 머니"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며,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방</p>	<p>("이용자" → "회원")</p>
--	---	-----------------------

<p>머니"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며,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이용 재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p>	<p>법으로 "회원"에게 이용 재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p>	
<p><b>제 9 조 (이용 계약의 해지)</b></p> <p>① "페이북 머니"는 "paybooc(ISP) 서비스"에 결합된 상품으로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의 이용 계약 해지 시 "페이북 머니"의 이용 계약도 해지됩니다.</p> <p>② "회사"는 "paybooc(ISP)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0 조 4 항(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에 따라 "이용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영업일 전에 "paybooc(ISP) 서비스" 및 "페이북 머니"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며,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제 3 호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p> <p>1.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p> <p>2. "paybooc(ISP)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및 "paybooc(ISP) 서비스" 이용자격</p>	<p><b>제 10 조(이용 계약의 해지)</b></p> <p>① "페이북 머니"는 "페이북 서비스"에 결합된 상품으로 "회원"이 "페이북 서비스"의 이용 계약 해지 시 "페이북 머니"의 이용 계약도 해지됩니다.</p> <p>② "회사"는 "페이북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7 조 제 4 항(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에 따라 "회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영업일 전에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페이북 서비스" 및 "페이북 머니"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4 호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p> <p>1.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페이북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 ("paybooc(ISP)" → "페이북")</p> <p>-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 제4항 내용 반영</p>

<p>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용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p> <p>3. (신설)</p> <p>3. 타인의 카드번호를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를 "paybooc(ISP) 서비스"에 등록하여 "paybooc(ISP)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p> <p>4. "모바일 기기의 명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p> <p>6. (신설)</p> <p>7. (신설)</p> <p>③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유,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해지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용자"가 "회사"의 해지 사실 안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 일 이내에</p>	<p>2. "페이북 서비스" 신청내용의 필수기재사항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p> <p>3. "회원"의 암호화된 CI 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회원"이 CI 수집 활용 동의를 철회하여 정상적인 "페이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p> <p>4. 타인의 카드번호를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를 "페이북 서비스"에 등록하여 "페이북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p> <p>5. "회원"이 "페이북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스마트 기기" 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페이북 앱"을 새로 설치하고 "페이북 서비스"에 가입신청하지 않은 경우</p> <p>6.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p> <p>7. "페이북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벗어난 회원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p> <p>③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유,</p>	
--	---	--

<p>이의신청 및 재사용,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가 확정됩니다.</p> <p>④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이용자”의 “paybooc(ISP) 서비스” 및 “페이북 머니”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p> <p>⑤ 본조에 의거 “페이북 머니” 이용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잔여 “페이북 머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보유한 “머니 쿠폰”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p>	<p>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해지 사실을 알려드리며, “회원”이 “회사”의 해지 사실 안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 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사용,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가 확정됩니다.</p> <p>④ “회사”는 “회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회원”의 “페이북 서비스” 및 “페이북 머니”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p> <p>⑤ 본조에 의거 “페이북 머니” 이용 계약이 종료될 경우 “회원”은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잔여 “페이북 머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보유한 “머니 쿠폰”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p>	
<p><b>제 3 장 “페이북 머니”의 이용</b></p> <p><b>제 10 조(페이북 머니의 적립)</b></p> <p>① “이용자”는 “paybooc(ISP) 서비스”를 통한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 “회사”가 발행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회사”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함을 통해 “페이북 머니”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p> <p>④ “페이북 머니”가 적립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페이북 머니” 적립도 취소되며, 만약</p>	<p><b>제 3 장 “페이북 머니”의 이용</b></p> <p><b>제 11 조(페이북 머니의 적립)</b></p> <p>① “회원”은 “페이북 서비스”를 통한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 “회사”가 발행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회사”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함을 통해 “페이북 머니”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p> <p>④ “페이북 머니”가 적립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페이북 머니” 적립도 취소되며, 만약</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  (“paybooc(ISP)” → “페이북”)</p>

<p>적립된 "페이북 머니"의 사용으로 인해 취소할 "페이북 머니"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보유한 잔여 적립 및 충전 "페이북 머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적립 및 충전되는 "페이북 머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이용 취소에 따른 "페이북 머니"의 차감기준 및 차감시점은 해당 카드 상품 약관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페이북 APP, 비씨카드 홈페이지 등 카드상품 안내 채널을 통해 안내합니다.</p>	<p>적립된 "페이북 머니"의 사용으로 인해 취소할 "페이북 머니"가 없을 경우 "회원"이 보유한 잔여 적립 및 충전 "페이북 머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적립 및 충전되는 "페이북 머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이용 취소에 따른 "페이북 머니"의 차감기준 및 차감시점은 해당 카드 상품 약관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페이북 APP, 비씨카드 홈페이지 등 카드상품 안내 채널을 통해 안내합니다.</p>	
<p><b>제 11 조(페이북 머니의 충전)</b></p> <p>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페이북 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p> <p>1.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에 등록한 본인의 실지명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p> <p>2.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라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는 방법</p> <p>②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페이북 머니"의 잔액 최고한도 및 1 회 충전 한도 범위 내에서 "페이북 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p> <p>③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충전 방법, 한도 및 절차 등 "충전"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p>	<p><b>제 12 조 (페이북 머니의 충전 및 충전금의 관리)</b></p> <p>① "회원"은 "회사"가 정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페이북 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p> <p>1. "회원"이 "페이북 서비스"에 등록한 본인의 실지명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p> <p>2.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라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는 방법</p> <p>② "회원"은 "회사"가 정한 "페이북 머니"의 잔액 최고한도 및 1 회 충전 한도 범위 내에서 "페이북 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p> <p>③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충전 방법, 한도 및 절차 등 "충전"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 ("paybooc(ISP)" → "페이북")</p> <p>-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 2 (선불충전금의 보호) 내용 반영</p>

<p>“페이북 머니”의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페이북 머니”를 “충전”하기로 합니다.</p> <p>④ (신설)</p>	<p>“페이북 머니”의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 “페이북 머니”를 “충전”하기로 합니다.</p> <p>④ “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하여 보유하고 있는 “페이북 머니” 충전금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 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p>	
<p><b>제 12 조(페이북 머니의 결제)</b></p> <p>① “페이북 머니”를 보유한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페이북 머니”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③ “회사”는 “페이북 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에 필요한 세부내용, 제한사항 등 “결제”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페이북 머니”를 사용하기로 합니다.</p>	<p><b>제 13 조(페이북 머니의 결제)</b></p> <p>① “페이북 머니”를 보유한 “회원”은 “가맹점”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페이북 머니”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③ “회사”는 “페이북 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에 필요한 세부내용, 제한사항 등 “결제”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 “페이북 머니”를 사용하기로 합니다.</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b>제 13 조(페이북 머니의 송금)</b></p> <p>① “페이북 머니”를 보유한 “이용자”는 “페이북 머니” “송금”을 통해 본인의 “페이북 머니”를 타인에게</p>	<p><b>제 14 조(페이북 머니의 송금)</b></p> <p>① “페이북 머니”를 보유한 “회원”은 “페이북 머니” “송금”을 통해 본인의 “페이북 머니”를 타인에게</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전송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p> <p>② “이용자”가 “페이북 머니”를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전송을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승낙한 이후에는 전송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p> <p>③ “이용자”가 “페이북 머니”를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전송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송이 철회되며, 타인에게 전송한 “페이북 머니”는 “이용자”에게 반환됩니다.</p> <p>④ “회사”는 “페이북 머니” “송금”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한도 등에 관한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페이북 머니”를 “송금”하기로 합니다.</p>	<p>전송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원”이 “페이북 머니”를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전송을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승낙한 이후에는 전송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p> <p>③ “회원”이 “페이북 머니”를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전송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송이 철회되며, 타인에게 전송한 “페이북 머니”는 “회원”에게 반환됩니다.</p> <p>④ “회사”는 “페이북 머니” “송금”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한도 등에 관한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 “페이북 머니”를 “송금”하기로 합니다.</p>	
<p><b>제 14 조(페이북 머니의 환급)</b></p> <p>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페이북 머니”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p>	<p><b>제 15 조(페이북 머니의 환급)</b></p> <p>① “회원”은 보유 중인 “페이북 머니”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내용 반영</p>

<p>“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p> <p>②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환급” 조건, 방법 및 절차 등 “환급”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의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p> <p>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페이북 머니” 잔액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p> <p>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페이북 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2. “페이북 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p> <p>3. (신설)</p> <p>4. (신설)</p>	<p>“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p> <p>②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환급” 조건, 방법 및 절차 등 “환급”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의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p> <p>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페이북 머니” 잔액의 전부를 “회원”에게 환급합니다.</p> <p>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페이북 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2. “페이북 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p> <p>3. “회원”에게 불리하게 “페이북 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페이북 머니”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4. “회원”이 직접 유상 충전한 일부터 7 일 이내에 미사용 금액 전액을 환불신청 할 경우. (단, 선물</p>	<p>-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내용 반영</p>
--	--	---------------------------------------



	<p>받은 머니, 이벤트 참여 등으로 적립받은 머니는 제외합니다.)</p> <p>5. "페이북 머니"의 잔액이 "회원"이 유상 충전한 금액의 40% 이하이고 "회원"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단, 유상 충전한 금액이 1만원 이하면 잔액이 20% 이하인 경우)</p>	
<p><b>제 15 조(페이북 머니의 유효기간 및 소멸)</b></p> <p>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회사" 또는 제휴사의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 참여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페이북 머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 용도 및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paybooc(ISP)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p> <p>③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페이북 머니"를 소멸시키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사실, 소멸예정 "페이북 머니", 소멸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유효기한 도래 30 일 이전까지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p>	<p><b>제 16 조 (페이북 머니의 유효기한 및 소멸)</b></p> <p>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회사" 또는 제휴사의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 참여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페이북 머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 용도 및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페이북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③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페이북 머니"를 소멸시키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사실, 소멸예정 "페이북 머니", 소멸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유효기한 도래 30 일 이전까지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회사"가 알고 있는 "회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 ("paybooc(ISP)" → "페이북")</p> <p>-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내용 반영</p>

<p>④ "회사"는 유효기간 및 소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p>	<p>④ "페이북 머니"의 유효기간 및 소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및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p>	
<p><b>제 16 조(페이북 머니 쿠폰)</b></p> <p>① "회사" 및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는 "회사" 및 "제휴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머니 쿠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③ "머니 쿠폰"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 및 "제휴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p> <p>④ "이용자"는 "머니 쿠폰"을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머니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⑤ "이용자"가 부당 또는 부정하게 "머니 쿠폰"을 취득한 경우 "이용자"는 "머니 쿠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p>	<p><b>제 17 조(페이북 머니 쿠폰)</b></p> <p>① "회사" 및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는 "회사" 및 "제휴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머니 쿠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③ "머니 쿠폰"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 및 "제휴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p> <p>④ "회원"은 "머니 쿠폰"을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머니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⑤ "회원"이 부당 또는 부정하게 "머니 쿠폰"을 취득한 경우 "회원"은 "머니 쿠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b>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b></p> <p><b>제 17 조(회사의 의무)</b></p> <p>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로 인한</p>	<p><b>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b></p> <p><b>제 18 조("회사"의 의무)</b></p> <p>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로 인한</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사고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회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사고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b>제 18 조(이용자의 의무)</b></p> <p>① “페이북 머니” 명의 정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p> <p>② “이용자”는 자신의 “페이북 머니”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 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p> <p>③ “이용자”는 “페이북 머니”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p>	<p><b>제 19 조(“회원”의 의무)</b></p> <p>① “페이북 머니” 명의 정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p> <p>② “회원”는 자신의 “페이북 머니”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 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21조  내용 반영</p>

<p>④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 1 항 후단의 행위를 하거나 제 2 항의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⑤ (신설)</p>	<p>③ “회원”은 “페이스북 머니”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p> <p>④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⑤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p><b>제 19 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b></p> <p>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하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p>	<p><b>제 20 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b></p> <p>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약관 제22조 내용 반영</p>
<p><b>제 20 조(이의신청 및 분쟁 처리·조정)</b></p> <p>① “이용자”는 “페이스북 머니”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p>	<p><b>제 21 조(이의신청 및 분쟁 처리·조정)</b></p> <p>① “회원”은 “페이스북 머니”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p> <p>③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p>	<p>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원”이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p> <p>③ “회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p>	
<p><b>제 5 장 손해배상 등</b></p> <p><b>제 21 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b></p> <p>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안정적으로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p> <p>② “페이북 머니”의 가상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의 경우,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대행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p>	<p><b>제 5 장 손해배상 등</b></p> <p><b>제 22 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b></p> <p>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안정적으로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p> <p>② “페이북 머니”의 가상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의 경우,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대행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p> <p>④ 제 3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p> <p>2. 제 3 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p> <p>3.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4. "이용자"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p> <p>④ 제 3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p> <p>2. 제 3 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p> <p>3.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회원"의 신원, 권한 및 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 3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4. "회원"이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 3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p>	
--	---	--

**제 22 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페이북머니"에 저장된 금액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 21 조 제 4 항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제 21 조 및 제 본조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표준전자금융거래약관」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 "회사"는 제21조 및 본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제 23 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회사"는 "회원" 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 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페이북머니"에 저장된 금액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 22 조 제 4 항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제 22 조 및 제 본조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표준전자금융거래약관」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

<p>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p>	<p>④ “회사”는 제 22 조 및 본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p>	
<p><b>제 23 조(준용)</b></p>	<p><b>제 24 조(준용)</b></p>	
<p><b>제 24 조(관할법원)</b></p> <p>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p>	<p><b>제 25 조(관할법원)</b></p> <p>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다만 방문판매 및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p>	<p>- 용어 변경  (“이용자” → “회원”)</p> <p>- 금소법의 관할에 관한 규정(제66조의2) 반영</p>
<p><b>제 6 조(적용)</b></p> <p>(신설)</p>	<p><b>제 6 조(적용)</b></p> <p>본 약관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2월 29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p>	